익산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44-221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민영	비규제지역	익산시 거주자	없음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7.07.(월)	2025.07.14.(월)	2025.07.15.(화)	2025.07.18.(금)	2025.07.22.(화)~ 2025.07.23.(수)	2025.07.24.(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이하 "불법행위재공급 주택"이라 함)을 사업주체가 취득하여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특별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각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법행위재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불법행위재공급)	O		X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공급질서교란자 또는 전매제한 위반자) 및 제58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부적격 당첨자)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동일 주택형 내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수의 9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pungkyeongchae.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과의 계약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07.(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30029입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1.23.(화)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865이므로,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외국인 제외)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7.14.(월)	2025.07.15.(화)	2025.07.18.(금)	2025.07.22.(화)~2025.07.23.(수)	2025.07.24.(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지원센터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동 433, 익산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A/S센터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익산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법인 외의 자가 실제 거래가격 6억원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제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없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주택과-33297호 (2025.07.04.)**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동 433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27층 12개동 총 1,566세대 중 불법행위 재공급 4세대 [특별공급 2세대(다자녀가구 1세대, 신혼부부 1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5년 07월 예정 (사용검사 완료된 아파트로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계	
2025930029	01	084.9368A	84A	84.9368	26.5124	111.4492	54.6763	166.1255	49.3875	3	1	1	2	1
	02	084.7209B	84B	84.7209	27.7739	112.4948	54.5373	167.0321	49.2619	1	-	-	-	1
	합 계									4	1	1	2	2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세대 현황**

약식표기	동호수	최초 모집공고 시 당첨자(계약자) 유형	금회 동호수 배정 대상 유형
84A	102동 802호	신혼부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일반공급
	109동 802호	일반공급	
	111동 2101호	다자녀가구	
84B	103동 2601호	일반공급	일반공급

※ 불법행위로 인한 재공급 세대는 특별공급 2세대(신혼부부 1세대, 다자녀가구 1세대), 일반공급 2세대, 총 4세대입니다.
※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하며, 약식표기 84A의 경우 청약 신청 유형별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호수는 당첨자의 유형(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일반공급)에 상관없이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합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표기	동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내
84A	102동 802호	42,023,900	304,966,100	346,990,000	34,699,000	312,291,000
	109동 802호	42,023,900	304,966,100	346,990,000	34,699,000	312,291,000
	111동 2101호	42,023,900	315,686,100	357,710,000	35,771,000	321,939,000
84B	103동 2601호	42,254,800	311,615,200	353,870,000	35,387,000	318,483,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의 청약 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내
84A	102동 802호	17,740,000	1,774,000	15,966,000
	109동 802호	17,740,000	1,774,000	15,966,000
	111동 2101호	17,740,000	1,774,000	15,966,000
84B	103동 2601호	20,570,000	2,057,000	18,513,000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거부 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불가)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호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유상옵션 설치품목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내	
84A	102동 802호	10,800,000	1,080,000	9,720,000	엔지니어드스톤(주방벽체+주방상판+아일랜드상판) 시스템에어컨 5개소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09동 802호	7,400,000	740,000	6,660,000	시스템에어컨 5개소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111동 2101호	7,400,000	740,000	6,660,000	시스템에어컨 5개소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84B	103동 2601호	7,400,000	740,000	6,660,000	시스템에어컨 5개소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이며, 품목의 추가 및 변경 계약은 불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공급금액	광주은행	1107-020-875859	수도산공원개발주식회사
발코니 확장금액	광주은행	1107-021-304239	제일건설㈜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광주은행	1107-021-304239	제일건설㈜

※ 상기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발코니 확장금액,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납부계좌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으로 기재)

4 특별공급

[2025.03.3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공급기준</td><td>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처리방법</th></tr>
<tr><td colspan="2">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td><td>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tr>
<tr><td rowspan="2">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td><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tr>
<tr><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td>모두 부적격 처리</td></tr>
</tabl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td></tr>
<tr><td>무주택
요건</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td></tr>
</table>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td></tr>
</table>

4-2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자</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td></tr>
<tr><td>당첨자
선정방법</td><td>■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td></tr>
<tr><td>비고</td><td>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table>
<tr><th>입주자모집공고일</th><th>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th><th>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th></tr>
<tr><td>2025.07.07.(월)</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d>(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td></tr>
</table>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비율</th><th colspan="6">소득금액</th></tr>
<tr><th>3인 이하</th><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h>8인</th></tr>
<tr><td>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td>140% 이하</td><td>~10,087,437원</td><td>~12,009,323원</td><td>~12,643,467원</td><td>~13,626,320원</td><td>~14,609,174원</td><td>~15,592,027원</td></tr>
<tr><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td>160% 이하</td><td>~11,528,499원</td><td>~13,724,941원</td><td>~14,449,677원</td><td>~15,572,938원</td><td>~16,696,198원</td><td>~17,819,459원</td></tr>
</table>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td></tr>
</table>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table>
<tr><th>구분</th><th>금액</th><th colspan="2">내용</th></tr>
<tr><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td rowspan="2">3억3,100만원
이하</td><td>건축물</td><td>-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tr><th colspan="2">건축물 종류</th><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tr>
<tr><td rowspan="2">주택</td><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tr>
<tr><td>단독주택</td><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tr>
<tr><td colspan="2">주택 외</td><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tr>
</table></td></tr>
<tr><td>토지</td><td>-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td></tr>
</table>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의3)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6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불법행위재공급 → 주택명 및 주택형 등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18.(금) ~ 2025.07.27.(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7.18.(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서류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 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군복무기간 명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의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관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당사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7년 이내의 혼인기간 또는 혼인여부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포함)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참고하여 발급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 제출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의료기간 직인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무소득자로 무소득 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전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조회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2]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참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재산세 발생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소유 부동산 관련 서류		• 본인 및 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제출

구분	제출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외 근무자 단순부임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 요구 서류	-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		위임장	청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자격서류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본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2005.07.01.「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개인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하여 안내한 서류 외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재직증명서상 육아휴직이 명시되어야 함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또는 홈택스), 해당직장
	금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③ 직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 자 : 근로계약서 또는 동일 호봉인 직급자의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③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직장 가입자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원본, 직인날인 필수)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에 해당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직인날인)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사업자등록증(사본) [국민연금 가입자] ②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입 확인) ③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미가입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① 세무서 ② 국민연금공단 ③ 국인연금공단/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전년도 재무제표 ⑤ 원천징수이행명세서(또는 배당금 지급 명세서 또는 배당금 원천징수영수증) ⑥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③, ④ 세무서 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원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해당년도 간이 지급명세서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수입 발생기간이 단기간으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 ② 재직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원본, 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프리랜서의 경우, 해당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과 위촉증명서 또는 해촉증명서 (※ 단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견본주택 비치 ② 사실증명(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견본주택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제 증명서류는 본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몇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공개로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대의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 전원의 합산 월평균 소득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제 증명 서류는 원본을(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2] 신혼부부 특별공급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 소득기준 초과 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 2의3 각 목의 사람(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의 부동산 소유 현황에 대한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 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 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 공동(개별)주택공시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 안내 > 조회/발급>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행정복지센터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외 위택스(www.wetax.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 부동산 소유 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 청약자 본인 및 전 세대원 공동/금융인증서 지참(※ 견본주택에서 청약자 및 전 세대원 조회내역 확인)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구/※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국통합발급요청)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 행정복지센터

※ 자산보유기준(3억 3,100만원 이하) 산정 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해당 대상입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본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하여 전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상기 부동산 소유현황 입증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일	당첨자 계약체결일
특별공급 일반공급	■ 일시 : 2025.07.18.(금) ■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7.22.(화)~2025.07.23.(수) 10:00~16:00 ■ 장소 : 사업주체 분양지원센터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동 433, 익산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A/S센터	■ 일시 : 2025.07.24.(목) 10:00~16:00 ■ 장소 : 사업주체 분양지원센터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동 433, 익산 제일풍경채 어바니티 A/S센터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체결일은 주택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현황, 과거 당첨사실 유무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은 공급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체결 가능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사업주체에 소명 서류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자로 판명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적격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 ※현금(수표) 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에「아파트 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발급분에 한함. **※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본인만 계약 가능(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전자수입인지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50%씩 균등 부담 (계약자 75,000원 / 사업주체 75,000원)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 계약 시 당사에서 출력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상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인감증명서(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분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인감도장(계약자)	
	○		위임장	
	○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5.07.25.(금)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5.07.25.(금)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 한도 확인)

9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10 단지여건 등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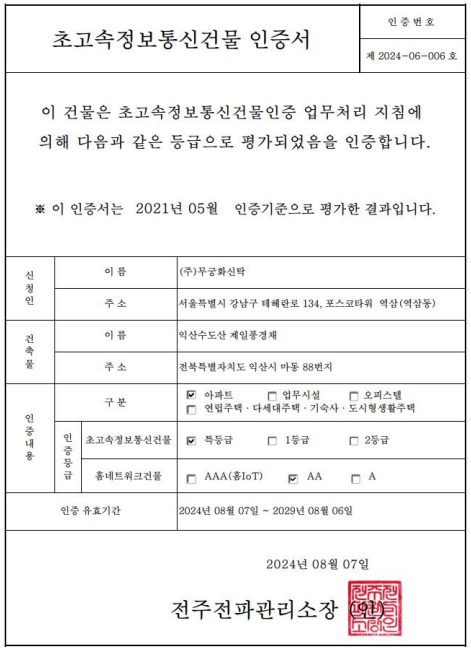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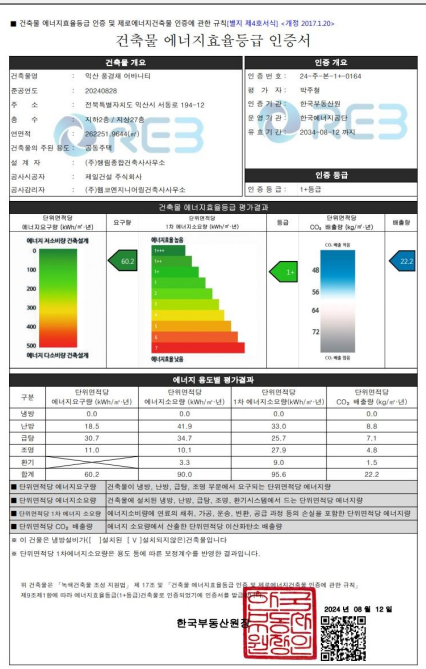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익산 수도산근린공원 민간특례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신 청 자 : (㈜무궁화신탁
3. 대 지 위 치 :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 88외 143필지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물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음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분양·임차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관련조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녹색건축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 익산 풍경채 어바니티	인 증 번 호 : G-SEED-C-2024-0750-5
건 축 주 : (주)무궁화신탁	인 증 기 관 : 한 국 부 동 산 원
준 공 (예 정) 일 : 2024.08.27.	유 효 기 간 : 2024.08.29. ~ 2034.08.28.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194-12	인증 등급
층 수 : 지하2층, 지상27층	인 증 등 급 : 일반(그린4등급)
연 면 적 : 262,251.9644㎡ (평가 연면적: 261,690.5721㎡)	인 증 기 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9-764호,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0.04.30.))
건 축 물 용 도 : 공동주택	
설 계 자 : (주)웰림종합건축사사무소	
공 사 시 공 자 : 제일건설 주식회사	
공 사 감 리 자 : (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일반(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종합등급 ★☆☆☆

2024년 08월 29일

한 국 부 동 산 원 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

인 증 번 호
제 2024-06-006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21년 05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신청인	이 름	(주)무궁화신탁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포스코타워 역삼(역삼동)
건축물	이 름	익산수도산 계일풍경채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마동 88번지
인증내용	구 분	☑ 아파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인증등급 홈네트워크건물	☐ AAA(홈IoT) ☑ AA ☐ A
인증 유효기간		2024년 08월 07일 ~ 2029년 08월 06일

2024년 08월 07일

전주전파관리소장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익산 풍경채 어바니티	인 증 번 호 : 24-주-본-1+-0164
준공연도 : 20240828	평 가 자 : 박주철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서동로 194-12	인 증 기 관 : 한국부동산원
층 수 : 지하2층/지상27층	운 영 기 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면적 : 262251.9644(㎡)	유 효 기 간 : 2034-08-12 까지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 등급
설 계 자 : (주)웰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인 증 등 급 : 1+등급
공사시공자 : 제일건설 주식회사	
공사감리자 : (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배출량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설계	60.2	에너지효율 높음 /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 CO_2 배출 많음	22.2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18.5	41.9	33.0	8.8
급탕	30.7	34.7	25.7	7.1
조명	11.0	10.1	27.9	4.8
환기		3.3	9.0	1.5
합계	60.2	90.0	95.6	22.2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 에너지 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 [V]설치되지않은]건축물입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4 년 08 월 12 일

한국부동산원장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소방	통신
회사명	(주)펨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진명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수양엔지니어링	(주)수양엔지니어링
감리금액	4,465,555,600	805,698,700	341,000,000	713,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용역원휴게실,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맘스스테이션,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공동시설[옥외(체육시설 등), 실내(피트니스,GX룸,골프연습실,체육관,탁구장 등)],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 **주차장 차로 높이 및 출입구 높이 등**

- 본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 폭은 6.0m(연석포함6.6m)이며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 천장고는 2.7m으로 계획되었으나 시공 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될 수 있고 주차공간의 천장고는 법적기준(2.1m)을 준수하여 시공 및 사용검사 완료됨.

■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 자격을 달리한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자격 및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어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① 본 불법행위 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② 부적격 소명 대상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으로 계약자가 직접 자금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대출기관 알선 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본 아파트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 재공급 세대 단지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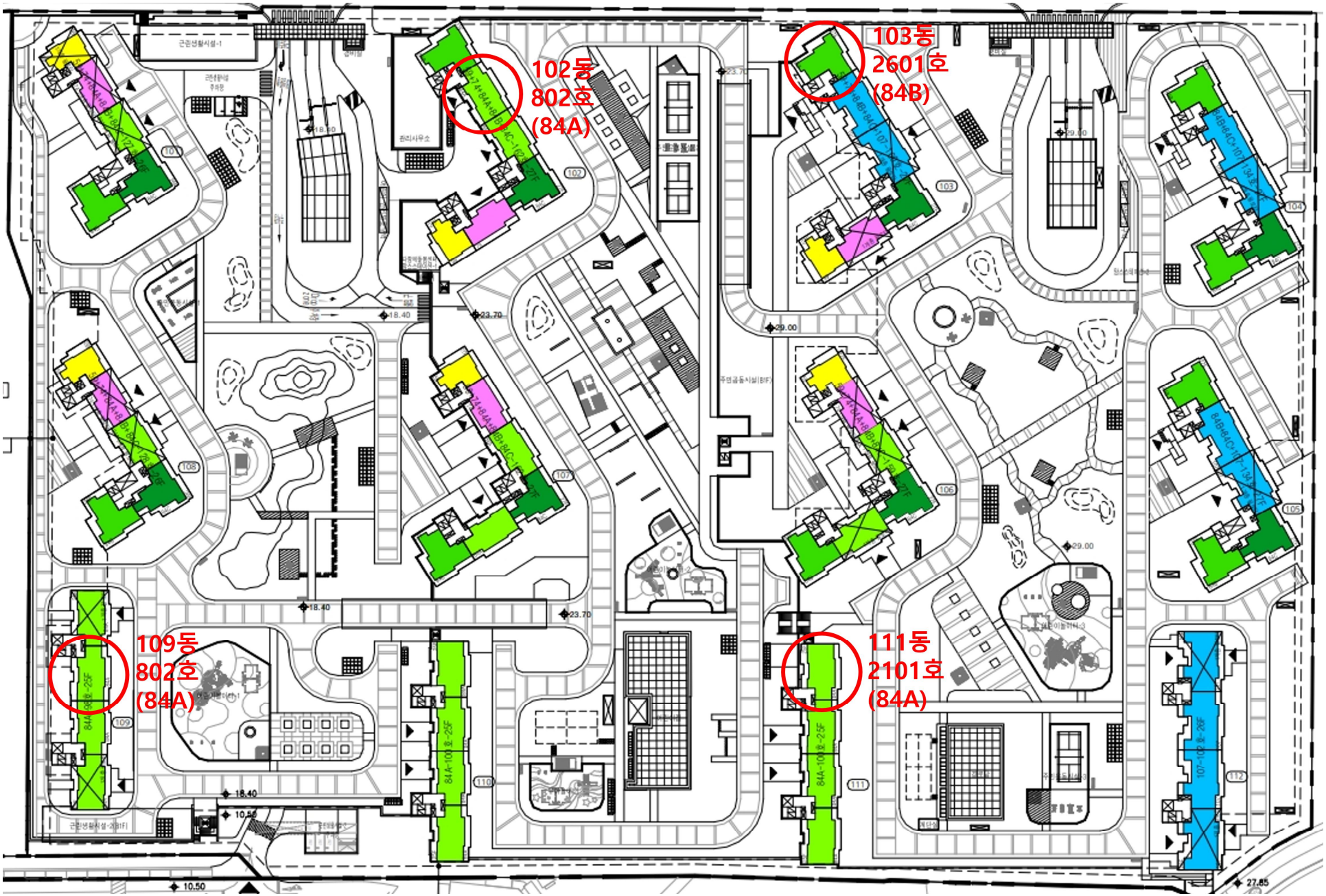

■ 불법행위 재공급 주택 동호수 배치도

2701	2702	2703	2705	2706	2707
2601	2602	2603	2605	2606	2607
2501	2502	2503	2505	2506	2507
2401	2402	2403	2405	2406	2407
2301	2302	2303	2305	2306	2307
2201	2202	2203	2205	2206	2207
2101	2102	2103	2105	2106	2107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1901	1902	1903	1905	1906	1907
1801	1802	1803	1805	1806	1807
1701	1702	1703	1705	1706	1707
1601	1602	1603	1605	1606	1607
1501	1502	1503	1505	1506	1507
1401	1402	1403	1405	1406	1407
1301	1302	1303	1305	1306	1307
1201	1202	1203	1205	1206	1207
1101	1102	1103	1105	1106	1107
1001	1002	1003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5	906	907
801	802	803	805	806	807
701	702	703	705	706	707
601	602	603	605	606	607
501	502	503	505	506	507
401	402	403	405	406	407
301	302	303	305	306	307
201	202	203	205	206	207
101	102	103	105	106	107
84B	84A		84C	74A	59A
102동(162세대)					

2701	2702	2703	2705	2706	2707
2601	2602	2603	2605	2606	2607
2501	2502	2503	2505	2506	2507
2401	2402	2403	2405	2406	2407
2301	2302	2303	2305	2306	2307
2201	2202	2203	2205	2206	2207
2101	2102	2103	2105	2106	2107
2001	2002	2003	2005	2006	2007
1901	1902	1903	1905	1906	1907
1801	1802	1803	1805	1806	1807
1701	1702	1703	1705	1706	1707
1601	1602	1603	1605	1606	1607
1501	1502	1503	1505	1506	1507
1401	1402	1403	1405	1406	1407
1301	1302	1303	1305	1306	1307
1201	1202	1203	1205	1206	1207
1101	1102	1103	1105	1106	1107
1001	1002	1003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5	906	907
801	802	803	805	806	807
701	702	703	705	706	707
601	602	603	605	606	607
501	502	503	505	506	507
401	402	403	405	406	407
301	302	303	305	306	307
201	202	203	205	206	207
101	102		105		107
84B	107A		84C	74A	59A
103동(160세대)					

2501	2502	2503	2505
2401	2402	2403	2405
2301	2302	2303	2305
2201	2202	2203	2205
2101	2102	2103	2105
2001	2002	2003	2005
1901	1902	1903	1905
1801	1802	1803	1805
1701	1702	1703	1705
1601	1602	1603	1605
1501	1502	1503	1505
1401	1402	1403	1405
1301	1302	1303	1305
1201	1202	1203	1205
1101	1102	1103	1105
1001	1002	1003	1005
901	902	903	905
801	802	803	805
701	702	703	705
601	602	603	605
501	502	503	505
401	402	403	405
301	302	303	305
201	202	203	205
	102	103	
84A			
109동(98세대)			

2501	2502	2503	2505
2401	2402	2403	2405
2301	2302	2303	2305
2201	2202	2203	2205
2101	2102	2103	2105
2001	2002	2003	2005
1901	1902	1903	1905
1801	1802	1803	1805
1701	1702	1703	1705
1601	1602	1603	1605
1501	1502	1503	1505
1401	1402	1403	1405
1301	1302	1303	1305
1201	1202	1203	1205
1101	1102	1103	1105
1001	1002	1003	1005
901	902	903	905
801	802	803	805
701	702	703	705
601	602	603	605
501	502	503	505
401	402	403	405
301	302	303	305
201	202	203	205
101	102	103	105
84A			
111동(100세대)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사
상호명	수도산공원개발㈜	제일건설㈜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179, 2층 (창인동1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법인등록번호	214911-0059230	135811-0093658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2025.06.30. 개정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 분양문의 ☎1544-2215 (홈페이지 https://www.pungkyeongchae.co.kr)